

학습자료

(최신 직장인을 위한 필수법정 교육과정-20강)

■ 1차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인터넷중독은 정보 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로, 사이버 중독, 인터넷 중독 질환, 병적 인터넷 사용, 인터넷 증후군, 웨버홀리즘(Webaholism)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터넷 중독을 탈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일지를 작성하고 인터넷 과다사용 원인을 찾으며, 규칙으로 시간을 관리한다.

-인터넷 사용에 있어 자율적 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병적으로 인터넷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중독이라 한다.

*음란물 중독

-음란물 중독이란 섹스나 포르노 등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강박적으로 계속 드나드는 경우를 말한다.

*인터넷중독의 유형 중 정보검색 중독의 증상

- 무의미한 웹서핑을 한다.
- 불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 인터넷에서 본 인상 깊은 것은 뭐든지 닥치는 대로 수집한다.
- 정보검색 중독자는 시간이 나면 자료를 편집하리라 생각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인터넷 중독 탈출 및 예방법

-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연습한다.
- 생활우선순위를 세운다.
- 컴퓨터 없는 휴일을 만든다
- 인터넷 사용일지를 작성
- 인터넷 과다사용 원인을 찾는다
- 규칙적으로 시간을 관리한다.

■ 2차시 산업안전개론

*산업안전보건의 목표

- 인명존중(안전관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도주의이다)
- 경영경제(안전보건은 손실관리 차원의 기업경영 기법이다)

-사회적 신뢰(안전한 직장은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게 한다)

***재해조사의 원칙**

-3E, 4M에 따라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

-3E는 관리적 원인,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이며, 4M은 인적 요인, 기계적 요인, 작업적 요인, 관리적 요인이다.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직적인 일련의 조치를 뜻한다.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 3차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작업 중지**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취한 후 작업 재개

-근로 중 급박 위험시 대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

-작업 중지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세 가지: ①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 기술성, ②복잡/다양성, ③강행성/규정성

■ 4차시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1) - 건강진단 및 뇌심혈관계 질환관리

***뇌심혈관 질환 원인**

-스트레스는 흡연, 음주, 폭식 등을 불러 뇌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동맥경화를 촉진해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된다.

- 우울증은 흡연, 신체활동 감소, 비만 등과 관련이 있으며, 고혈압의 발생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것이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중요하다.
- 경쟁적이고, 성취욕이 강하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뇌심혈관질환의 원인 중 교정할 수 있는 요인**

- 기초질환(고혈압, 당뇨 등)
- 혈중 지질변인
- 작업 관련 요인

***건강진단**

- 건강진단이란 자기 스스로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때 의사의 진찰이나 의학적 검사를 통해 신체적인 이상 소견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건강관리 방법을 말한다.
- 특히, 근로자들은 작업환경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도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건강진단의 종류**

- 일반 건강진단이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의 고혈압, 당뇨 등 일반적인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특수 건강진단이란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6~24개월 주기로 실시하며, 소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발생되는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한다.
- 배치 전 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를 확보해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적합성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추후 업무상 질병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 수시 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애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 5차시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2) - 금연교육

***니코틴의 중독**

-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은 7~10초 만에 뇌로 들어가 생리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
- 담배를 피우고 30분 정도 경과하면 정맥 내 니코틴 농도는 최고 농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데, 흡연자는 이때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 각 개인에서 니코틴에 대한 선호 정도는 흡연 경력 초기에 나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갖게 된다.
- 흡연자들은 니코틴 흡수가 너무 적은 것(금단증상 초래)도, 너무 많은 것(과량으로 인한 기분 나쁜 영향)도 피하려고 한다.

***간접흡연**

- 간접흡연 담배연기는 발암물질이며, 안전한 허용용량이 없다.
- 담배연기에는 4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소 250여종은 해롭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 50종 이상에서 발암성이 인정되었다.
- 성인에서, 간접흡연은 심각한 심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을 초래하며, 대표적인 질환으로 관상동맥질환과 폐암이 있다.
- 영아에서는 돌연사 증후군을 일으키며 임신부에서는 저체중아 출산을 초래한다.

***금연과 일반적 건강이득**

- 담배를 끊게 되면 모든 연령대에서 즉각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이득이 발생한다.
- 담배를 피면서 생긴 추가 위험은 담배를 끊자마자 곧 감소하고, 적어도 10~15년간은 이러한 감소 패턴이 지속된다.
- 35세 이전에 담배를 끊는다면 평균 수명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과 비슷해진다.
- 사망률에 금연이 미치는 영향은 젊을수록 더 크게 나타나지만, 어느 연령에서 끊더라도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계속 피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게 된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 국제보건기구(WHO)에서는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채택하여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담배 연기 속, 건강과 관련된 중요 성분 3가지**

- 타르
- 일산화탄소
- 니코틴

***흡연**

- 흡연과 질병은 양-반응 관계에 있어, 흡연시작 연령, 흡연 개수, 흡연 년수 등이 높은 사망률과 비례한다.

■ 6차시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3) - 근골격계질환 예방

***근골격계질환**

- 정의: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 원인: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적인 동작,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 작업환경 불량, 빠른 작업속도
- 근골격계예방 운동법: 다리 교대 운동, 근육강화 운동, 스트레칭,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대책 실시만이 대안이다.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요인**

- 작업환경 불량
- 빠른 작업속도
- 과다한 작업량이나 많은 작업시간 또한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

■ 7차시 MSDS와 GHS

***MSDS 제도의 도입 배경**

- 근로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 화학물질 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자

***GHS**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n Classification and Labeling for Chemicals)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GHS 경고표지 부착 방법**

-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유해,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GH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화학물질을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 함유제제 단위로 용기 및 포장에 인쇄물 등을 부착한다.
-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GHS의 이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해, 위험성 정보 전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환경보호가 강화
- 기존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안정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제공
-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용이
- 화학물질을 중복해서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감소

■ 8차시 소방안전교육

*연소의 3요소

- 산소
- 점화원
- 가연물

*화재의 특성

- 성장성
- 불안전성
- 겨울과 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

*화재예방 대책

- 쓰레기통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 노후된 전열 기구의 사용 금지, 적정 용량의 퓨즈를 사용한다.
- 가스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누설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근다.
- 가스 누설 시는 중간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바닥에 깔려 있는 가스를 비로 쓸어내 듯이 밖으로 내보내고 주변의 불씨를 제거하며, 전기기구를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소화기

- 소화기는 각 층별, 각 실별, 대상물별 능력단위 이상으로 설치하며,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도록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는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손잡이를 불쪽으로 접근한다.
- 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뽑는다.
-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움켜쥐어야 한다.

■ 9차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

*교통사고의 대비 요령

-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 시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해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참여하지 말고 사고현장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붕괴사고에 대한 대비 방법**

-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공기 공급이 잘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쪽,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린다.
-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그 곳에 머무르고,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성냥이나 스토브 등을 켜지 말고 손전등을 사용해야 한다.

***수상안전**

- 레저 활동을 할 경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 활동 전에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활동 중에도 현지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기상 불량 시 무리한 레저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천둥번개가 칠 때에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 레저 활동 전에 레저기구의 연료가 충분한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비상연락 수단과 조난신호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바다에서는 휴대폰이나 다른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10차시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특징**

- 피해자는 행위자의 처벌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피해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도 우려가 되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
- 성희롱은 행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재발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어렵다.
- 20-30대의 젊은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기업 차원에서의 대안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행위자의 부서 전환 배치 정도로 대처하고 있다. 많은 기업의 조직문화가 성희롱에 관대한데, 이러한 조직문화의 개선이 쉽지 않다.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구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로 본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행위자로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주, 근로자로 보며 고객은 제외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피해자는 근로자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피해자는 제한이 없다.

■ 11차시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단계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의 사항을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이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보호 수칙

- 적절한 방법으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관행이 아닌 법률근거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것이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시 위탁자와 수탁자는 하나로 볼 수 있다.
- 웹 페이지상에서 개인정보 취급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정정 등은 정당한 요구이다.
- 개인정보 취급현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보유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 수집 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원칙**

-민간정보수집금지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

■ 12차시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내부관리계획 수립,운영 방법)**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수집 출처 고지 절차 수립 및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인정보 불필요 여부 점검, 파기 절차/ 방법 수립 및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취급자 PC에 고유식별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저장에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도록 수립하여 운영한다.

-내부관리 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보호책임자를 공개한다.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비밀번호는 최소 10자리의 경우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하며, 최소 8자리의 경우에는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

해야 한다.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생성해야 한다.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개의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 13차시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

-법률 제5조 2항에 의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성인기본소생술

-가슴 압박 위치는 가슴뼈의 아래쪽 ½이다.

-인공호흡 없이 가슴압박만 해도 생존율에 큰 차이는 없다.

-가슴 압박 교대 시 hand off time은 10초 이내로 해야 한다.

-제세동 쇼크를 시행한 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기도폐쇄

-목을 움켜잡는 징후를 보이면 목에 뭐가 걸렸나요? 라고 물어본다.

-기도폐쇄로 판단되면 즉각적인 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복부 밀어내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나 비만인 경우에는 복부 밀어내기가 아닌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시행한다.

■ 14차시 성희롱 예방의 이해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의 발생 이유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눈치가 없고 답답한 성격

-조직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음

*정당한 전보발령

-기술혁신 및 기업재편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인해 전보발령 한 경우

-업무의 능률증진을 위해 전보발령 한 경우

-직장질서의 유지·회복 내지 근로자간 인화를 위해 전보발령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 폭력 행위
- 직장 내 성희롱 행위
- 업무방해 행위

■ 15차시 산업재해보상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업무상 부상 등에 의해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재법 제52조).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요양이 끝난 재해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업무상 재해 사례

- 아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 중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로 인한 사고
- 출장 중 정상적인 경로를 가다가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외출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6차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근로자측 장점

- 세제혜택
- 수급권 강화
-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보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개월 이상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17차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이해(1)

***속지주의**

-대한민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는 주의

***청탁금지법**

-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청탁금지법 제5장 징계및 벌칙 참조).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14가지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와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참조)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참조). 그리고 부정청탁의 경우에는 모두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 부정청탁의 예외중 하나로서 단순한 선처 또는 편의를 부탁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18차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이해(2)

***사교목적의 선물**

-사교목적 선물의 경우는 5만원이 상한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별표 참조)

***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위 경우 직무관련성은 요하지 않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 제1항 참조).

***직무관련성의 유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금지로 인한 범죄의 성립요건과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의 수수금지로 인한 위반행위 성립요건

***청탁금지법상 신고자등의 보상금 지급신청 시한**

-수입의 회복 등등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5급이하의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은 20만원.(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참조)

***양벌규정(청탁금지법 제24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임직원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법인또는 단체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19차시 계절별 건강관리(봄)

***알레르기 질환의 일반적 관리**

- 페니실린 투여
- 애완동물 키우지 않기
- 면역요법
- 먼지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청소를 자주하고 카펫을 사용 자제

***결막염**

-결막염 발생 시 가급적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하고, 손을 자주 씻음, 눈의 건조를 예방하도록 하며, 눈의 결막염이 의심되면 안과 전문의의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함

***춘곤증의 관리 방법**

-일반적인 관리로 규칙적인 생활,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커피, 음주, 흡연 자제하기, 규칙적인 식사 및 과식 줄이기,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 비타민 B1, C가 많고 입맛을 돋우는 음식 섭취 등이 있습니다.

■ 20차시 계절별 건강관리(겨울)

***심뇌혈관질환의 개인적인 위험요인**

- 고혈압
- 당뇨
- 흡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수칙**

-심뇌혈관의 예방 수칙으로 6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며, 그 외에도 스트레스 줄이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치아 건강 유지,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금연, 정기 건강 검진 등이 있습니다.

***한랭질환의 예방**

-무리한 운동은 삼가하며,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한다. 실내 환경으로는 실내를 18~20℃ 정도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다. 따뜻한 옷을 입으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다.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며,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